

업무취급승인신청서

신청인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
	퇴직 전 소속	퇴직 전 직위	
	퇴직일	퇴직 전 직급 등	
	휴대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
	주소		

취업 (예정) 사실 ※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	기관명	취업예정 직위	
	취업예정일	기관규모 (억원)	자본금 또는 기본재산
			외형거래액
취업 후 담당업무			

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및 승인신청 사유	업무취급 승인신청 대상업무 *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재합니다.		
	승인신청 사유 *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8조의2제3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」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」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취업 지원·예정확인서, 취업 증명 서류(재직증명서 등), 개업 증명 서류(사업자등록증 등) 중 하나를 작성하여 첨부하십시오.		
------	---	--	--

처리절차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수(조사/확인/검토)	→	승인여부 결정	→	통보
신청인 (퇴직공직자)		처리기관 (헌법재판소사무처장)		처리기관 (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)		처리기관 (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)